

#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박채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3
----------	------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박채연,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 1. 제정이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자제(안 제5조)
- 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사업 등(안 제6조)

## 3. 근거법규

-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 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자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 거 법 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